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해설편 9p	문제-본문	<p>결 2015.7.16. 2015R2347 정호 ㉔ (○) 대판 2018.12.28. 2014도17182</p> <p>20 ㉔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p> <p>21 ㉔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p> <p>22 ㉔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p> <p>21 ㉔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p> <p>22 ㉔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p> <p>21 ㉔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p> <p>22 ㉔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p>	<p>④ (○) 대판 2020. 4. 29. 2017도13409</p>
		수정 사유	해설 오류
문제편 11p	문제-문항	<p>21 ㉔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p> <p>22 ㉔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p> <p>21 ㉔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p> <p>22 ㉔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 영예 공판>공판일자 반도상</p>	<p>④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p>
		수정 사유	문제_문항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해설편 102p	정답	<div data-bbox="352 257 906 1064"> <p>형사소송법 문제편 149p</p> <h2>제9회 경찰승진 최종모의고사</h2> <p>정답해설</p> <table border="1"> <tr><td>01</td><td>02</td><td>03</td><td>04</td><td>05</td><td>06</td><td>07</td><td>08</td><td>09</td><td>10</td></tr> <tr><td>11</td><td>12</td><td>13</td><td>14</td><td>15</td><td>16</td><td>17</td><td>18</td><td>19</td><td>20</td></tr> <tr><td>21</td><td>22</td><td>23</td><td>24</td><td>25</td><td>26</td><td>27</td><td>28</td><td>29</td><td>30</td></tr> <tr><td>31</td><td>32</td><td>33</td><td>34</td><td>35</td><td>36</td><td>37</td><td>38</td><td>39</td><td>40</td></tr> </table> <p>문항별 정답지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문항</th> <th>영역</th> <th>○</th> <th>×</th> <th>문항</th> <th>영역</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td>01</td><td>사법>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td><td></td><td></td><td>21</td><td>공판>공판정리</td><td></td><td></td></tr> <tr><td>02</td><td>사법>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td><td></td><td></td><td>22</td><td>공판>공판정리</td><td></td><td></td></tr> <tr><td>03</td><td>사법>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td><td></td><td></td><td>23</td><td>공판>공판정리</td><td></td><td></td></tr> <tr><td>04</td><td>사법>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td><td></td><td></td><td>24</td><td>공판>공판정리</td><td></td><td></td></tr> <tr><td>05</td><td>사법>소송주체와 소송주인</td><td></td><td></td><td>25</td><td>공판>공판정리</td><td></td><td></td></tr> <tr><td>06</td><td>수사와 공소>수사</td><td></td><td></td><td>26</td><td>공판>공판정리</td><td></td><td></td></tr> <tr><td>07</td><td>수사와 공소>수사</td><td></td><td></td><td>27</td><td>공판>공판정리</td><td></td><td></td></tr> <tr><td>08</td><td>수사와 공소>수사</td><td></td><td></td><td>28</td><td>공판>공판정리</td><td></td><td></td></tr> <tr><td>09</td><td>수사와 공소>수사</td><td></td><td></td><td>29</td><td>공판>공판정리</td><td></td><td></td></tr> <tr><td>10</td><td>수사와 공소>수사</td><td></td><td></td><td>30</td><td>공판>공판정리</td><td></td><td></td></tr> <tr><td>11</td><td>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td><td></td><td></td><td>31</td><td>공판>공판정리</td><td></td><td></td></tr> <tr><td>12</td><td>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td><td></td><td></td><td>32</td><td>공판>공판정리</td><td></td><td></td></tr> <tr><td>13</td><td>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td><td></td><td></td><td>33</td><td>공판>공판정리</td><td></td><td></td></tr> <tr><td>14</td><td>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td><td></td><td></td><td>34</td><td>공판>공판정리</td><td></td><td></td></tr> <tr><td>15</td><td>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td><td></td><td></td><td>35</td><td>공판>공판정리</td><td></td><td></td></tr> <tr><td>16</td><td>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td><td></td><td></td><td>36</td><td>상소와 비상구제절차>상소</td><td></td><td></td></tr> <tr><td>17</td><td>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td><td></td><td></td><td>37</td><td>상소와 비상구제절차>상소</td><td></td><td></td></tr> <tr><td>18</td><td>수사와 공소>수사의 종료와 공소의 제기</td><td></td><td></td><td>38</td><td>상소와 비상구제절차>비상구제절차</td><td></td><td></td></tr> <tr><td>19</td><td>수사와 공소>수사의 종료와 공소의 제기</td><td></td><td></td><td>39</td><td>상소와 비상구제절차>특별항고</td><td></td><td></td></tr> <tr><td>20</td><td>공판>공판정리</td><td></td><td></td><td>40</td><td>상소와 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td><td></td><td></td></tr> </tbody> </table> <p>102 경찰승진 10회 최종모의고사 형사소송법(400제)</p> </div>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문항	영역	○	×	문항	영역	○	×	01	사법>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21	공판>공판정리			02	사법>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22	공판>공판정리			03	사법>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23	공판>공판정리			04	사법>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24	공판>공판정리			05	사법>소송주체와 소송주인			25	공판>공판정리			06	수사와 공소>수사			26	공판>공판정리			07	수사와 공소>수사			27	공판>공판정리			08	수사와 공소>수사			28	공판>공판정리			09	수사와 공소>수사			29	공판>공판정리			10	수사와 공소>수사			30	공판>공판정리			11	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			31	공판>공판정리			12	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			32	공판>공판정리			13	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			33	공판>공판정리			14	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			34	공판>공판정리			15	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			35	공판>공판정리			16	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			36	상소와 비상구제절차>상소			17	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			37	상소와 비상구제절차>상소			18	수사와 공소>수사의 종료와 공소의 제기			38	상소와 비상구제절차>비상구제절차			19	수사와 공소>수사의 종료와 공소의 제기			39	상소와 비상구제절차>특별항고			20	공판>공판정리			40	상소와 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2번 정답 : 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문항	영역	○	×	문항	영역	○	×																																																																																																																																																																																																												
01	사법>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21	공판>공판정리																																																																																																																																																																																																														
02	사법>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22	공판>공판정리																																																																																																																																																																																																														
03	사법>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23	공판>공판정리																																																																																																																																																																																																														
04	사법>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24	공판>공판정리																																																																																																																																																																																																														
05	사법>소송주체와 소송주인			25	공판>공판정리																																																																																																																																																																																																														
06	수사와 공소>수사			26	공판>공판정리																																																																																																																																																																																																														
07	수사와 공소>수사			27	공판>공판정리																																																																																																																																																																																																														
08	수사와 공소>수사			28	공판>공판정리																																																																																																																																																																																																														
09	수사와 공소>수사			29	공판>공판정리																																																																																																																																																																																																														
10	수사와 공소>수사			30	공판>공판정리																																																																																																																																																																																																														
11	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			31	공판>공판정리																																																																																																																																																																																																														
12	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			32	공판>공판정리																																																																																																																																																																																																														
13	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			33	공판>공판정리																																																																																																																																																																																																														
14	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			34	공판>공판정리																																																																																																																																																																																																														
15	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			35	공판>공판정리																																																																																																																																																																																																														
16	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			36	상소와 비상구제절차>상소																																																																																																																																																																																																														
17	수사와 공소>상제제도와 강제수사			37	상소와 비상구제절차>상소																																																																																																																																																																																																														
18	수사와 공소>수사의 종료와 공소의 제기			38	상소와 비상구제절차>비상구제절차																																																																																																																																																																																																														
19	수사와 공소>수사의 종료와 공소의 제기			39	상소와 비상구제절차>특별항고																																																																																																																																																																																																														
20	공판>공판정리			40	상소와 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수정 사유	정답 오류																																																																																																																																																																																																																
해설편 108p	정답	<div data-bbox="352 1153 906 1937"> <p>인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불리 불 것도 아니다(대판 2016.12.15. 2015도 3692).</p> <p>21 정답 ④ 영역 공판>공판정리</p> <p>정답해설 ㉠ (○) 대판 1969.3.24. 6951114 간판, 형사소송법 제254 조 제2항은 수 개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간에 예비적·확립적 기재를 명분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한 판례의 태도이다. 주이항 원은 공소제기 예비적·확립적 주기는 공소장작성의 일부로서 용의성이 인정되는 정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수개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확립적으로 추가할 수는 없다. ㉡ (○) 대판 1991.6.9. 8151298, 본위적 공소사실이 유죄인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 없다. 이는 간사의 공소제기 취지대로 유죄판결이 나온 이상, 간사에게 형사지휘자 상소이유가 없다는 판사이다. ㉢ (○) 대판 1976.5.28. 7651126, 예비적·확립적 기재의 경우는 각 공소사실 상호간을 불가분의 관계로 본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상소라도 전부가 이상과 되고, 상소심으로서도 불복하지 않았던 부분에 심판대상으로 보아야 가능하다. ㉣ (○) 예비적·확립적으로 기재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후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모든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한 판단을 요한다.</p> <p>22 정답 ② 영역 공판>공판정리</p> <p>정답해설 ㉠ (○) 대판 2000.4.11. 2000도566 ㉡ (×) 대판 1999.4.13. 995375 ㉢ (○) 대판 1977.4.28. 775814 ㉣ (×) 대판 2011.3.24. 2010도18103</p> <p>23 정답 ② 영역 공판>공판정리</p> <p>정답해설 ㉠ (×) 간사는 서부 등의 목적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대제2003.9.13 제2항). ㉡ (○) 형사법 2010.6.24. 2009헌마1057 ㉢ (○) 형사법 2017.12.28. 2015헌마1632 ㉣ (○) 제2963.9.4 제2항</p> <p>24 정답 ② 영역 공판>공판정리</p> <p>정답해설 ㉠ (×)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진다. 한편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진술이나 주장한 항변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료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정당성에 반당한다(대판 2018.03.29. 2018도327).</p> <p>㉡ (○) 대판 2013.7.26. 201352511 ㉢ (○) 형사소송법 제303조 제2항 ㉣ (×) 형사소송법 제303조 제2항은 재판장에게 권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더라도 공판정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위 공판정리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영향을 미친 법률이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77.5.10. 7452293).</p> <p>25 정답 ② 영역 공판>공판정리</p> <p>정답해설 ㉠ (×) 이대선문의 기회는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규칙 제76조 제4항).</p> <p>108 경찰승진 10회 최종모의고사 형사소송법(400제)</p> </div>	22번 정답 : ①																																																																																																																																																																																																																
		수정 사유	정답 오류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